

신라 진표율사 연구 ()

참회계법 확립과 교화

A Study on Ven . Jin - pyo of Shilla Dynasty ()

저자 (Authors)	채인환 In Hwan Chae
출처 (Source)	불교학보 25 , 1988.12, 39-63(25 pages) BUL GYO HAK BO 25 , 1988.12, 39-63(25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120
APA Style	채인환 (1988). 신라 진표율사 연구 (). 불교학보, 25, 39-6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1/09/23 14:2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 眞表律師 研究(Ⅲ)

—懺悔戒法の 確立과 教化—

蔡 印 幻

- | | |
|-------------------|-------------------|
| Ⅲ. 占察懺悔戒法の 確立과 行化 | 3. 占察懺悔戒法에 의한 行化와 |
| 1. 新羅의 占察法會 | 傳承 |
| 2. 眞表의 戒法 | 結 說 |

Ⅲ. 占察懺悔戒法の 確立과 行化

1. 新羅의 占察法會

占察法會라는 것은 ‘占察經’에서 說하는 바를 의지하여 중생의 罪障을 占察하고, 이에 따라서 懺悔滅障하는 法을 수행하여 大乘의 淨戒를 받게 하도록 하는 방편으로써 木輪相의 占察法을 행하는 法會를 말하는 것이다.

中國에서의 初期流行의 時期였던 隋代의 末頃에는 新羅에서도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것 같다. 현재에 남아 있는 文獻上에서 볼 수 있는, 新羅에서 행해진 占察法會에 관한 가장 오랜 것으로서는, 新羅 第 26 代 眞平王(579~631)의 시대에 활약한 圓光의 行蹟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愚迷한 衆生들을 開曉하기 위한 歸戒滅懺의 法으로써 占察寶를 設置하여 이것을 恒規로 삼았다’라고 하는 記錄과, 또 하나는 같은 眞平王의 시대에 比丘尼인 智惠가 仙桃山의 神母의 夢告에 의하여 每年의 春季와 秋季에 十日동안 씩 많은 善男善女들과 함께 占察法會를 設行하였다고 하는 記錄의 두가지가 있다. 즉 三國遺事 卷四의 圓光西學條에¹⁾

建福 三十年 癸酉(眞平王 即位三十五年, 613)의 가을에 隋의 使臣인 王世儀가 왔다.²⁾ 皇龍寺에 百座道場을 設置하고,³⁾ 여러 高德들을 請하여 經을 說하게 하였는데 圓光이 가장 上首에 있었다. 이 때에 議論하기를 ‘原宗이⁴⁾ 佛法을 興起케 한 已來로, 津梁을 처음으로 設置하

1) 三國遺事 卷4, (大正藏 49.1003·a).

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35 年條에도 기록이 있다.

3) 一日에 百의 獅子의 高座를 設置해서, 高僧大德을 招請하여 經典을 講說하는 大法會.

4) 新羅 제23대 法興王의 이름, 즉 法興王 15 年(528)에 佛教의 傳布가 新羅에서 公認된 것을 말한다.

였으나, 아직도 堂奧⁵⁾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歸戒滅穢의 法으로써 愚迷한 이들을 開曉케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圓光은 그가 住하고 있는 嘉栖岬⁶⁾에다 占察寶⁷⁾를 存置하였고, 이것을 恒規로 삼도록 하였다. 이 때에 檀越尼가 있어서 田을 占察寶에 納施하였는데, 지금의 東平郡의 田一百結이 그것이며, 그 古籍이 아직도 存在하고 있다.

고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여 法興王十五年(528)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시행된지 불과 백년 이내의 역사를 지내 온 당시의 新羅에 있어서 불교의 깊은 교리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중들을 교화하는데 있어서는 衆生을 攝化하는 方便으로써 占察法會를 設置함이 필요함을 圓光이 제안하게 되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施行되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그런데 이 占察法이 그보다 이전에 이미 신라에 전해져서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圓光이 공식으로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일찍부터 隋에 들어 가서 오랜 세월 동안 유행하고 600년경에 신라로 돌아 온 圓光이 隋에서 유행하고 있던 占察法을 전해 와서 이 때부터 처음으로 행해지게 되었는지는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占察寶의 寶라고 하는 것은, 新羅佛敎에서 발생한⁸⁾ 독특한 寺院經濟機構形態의 한 종류이다.⁹⁾ 즉 사원에서 어떠한 특정의 佛事를 행하기 위

5) 三國遺事 卷4, 大正藏 49·1003·a의 13行에 있는 '未遺堂粵'의 粵은 奧. 즉 新羅에 佛敎가 傳來된지 아직 얼마되지 않아서 佛敎의 깊은 敎理를 理解하기에는 아직 機根이 未熟함을 가리킨다.

6) '岬'에 대해서 '岬을 古尸라고 한다. 故로 或은古尸寺라고도 하니, 마치 岬寺라고 하는 등과 같다'(大正藏 49·1002·c).

羅代의 已來로 當郡의 寺院으로써 鵝岬已下の 中小寺院이 있었으나, 三韓이 亂亡하는 사이에 大鵝岬·川鵝岬·所寶岬·天門岬·嘉西岬 등의 五岬이 모두 亡壞하였다.'(大正藏 49·1003·b)하는 등의 기록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7) 占察寶의 寶에 대해서 '이것은 本意로 보아서 <堂>의 訛字일 것이다'(國譯一切經史傳部 10·494, 註 24)라고 한 것을 보는데, 이것은 新羅에 있어서의 寶의 歷史의인 意義를 모르기 때문에 다만 글자의 뜻만으로 판단한 데서 일어난 誤解이다. 즉 '寶'라고 하는 것은 古代的 韓國佛敎에 있어서의 아주 獨特한 寺院經濟機構形態의 하나이며, 그 發生時期와 機能 그리고 名稱의 由來 등에 관해서는 諸說이 있으며, 여기에 그 몇가지를 소개하여 '寶'의 概念을 求하는 데 參考로 삼아 보려한다.

① 寶는 寺院에서 어떠한 特定の 佛事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錢穀 등을 蓄積하여 물질적인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며, 佛敎의 敎理에서 말하는 福田思想이나 布施倫理에다 바탕을 두는 殖利와 增殖에 의한 布施經濟이며, 또한 社會敎濟事業이기도 하였다. 그 名稱도 三寶에서 由來한 것이다. 그러므로 後世에 寶가 확대되어 一般의 社會經濟에까지 영향을 줌으로써 前期의 資本機能의 諸方面에서 役割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存立의 基礎에는 宗教倫理와의 연결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寶의 成立時期는 經濟와 宗教의 교섭이 제각기의 倫理面에서 결부된 시기였을 것이므로 이렇게 본다면, 바로 佛敎가 수입된과 동시에 시작하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金三守 '三寶의 佛敎社會學의 研究' "法施" 10號 pp. 20~24).

② 寶는 歷史의 食貨誌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한 용도에 충당하기 위해서 錢穀을 施納하고는 그 本錢을 存置하여 息利를 長久토록 취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後代에서 유행한 稷의 일종이며, 日本에서의 講와 같은 것이며, 梵語의 摩尼를 번역한 말인 寶에서 轉用된 名稱이다. (鮎具房之進 "雜攷" 第6輯, pp. 110~111).

③ 寶는 三寶의 寶이다. 寺院에서 '涅槃寶' 등의 諸名目を 세워서 錢帛을 施入받았고, 이것을 資本으로 하여 佛事를 하였으니, 이것을 寶라고 하였다. 長生庫 등처럼 利子와 그 回轉에 의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寶는 일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資財를 거출하는 것이며, 利殖이 그 목적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이 寶가 후세의 契의 前身이었다고 생각한다. (稻葉岩吉 '寺院經濟資料와 長生標' "東亞經濟研究" 15의 2).

④ 寶는 어느 목적을 위해서 基本金을 積立하고, 그 殖利에 의하여 經費를 충당하는 財用이며, 新羅時代부터 행해 오던 것이다. (崔南善 "故事通")

8) 7)의 ④를 參照바람

9) 7)의 ①을 參照바람

한 목적으로 금전이나 곡식 등을 저축함으로써 경제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佛事를 장기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佛敎敎理에서 나오는 福田思想이나 布施思想에 의거하는 增殖과 布施의 經濟機構이므로 그 이름도 三寶의 寶에서 나온 것이다.¹⁰⁾ 따라서 占察寶란, 占察法會를 항구적이며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불교신도들의 친목과 경제적인 기초를 다지려는 목적으로 시설된 계(契)형태의 조직기구¹¹⁾인 것이며, 이러한 占察法會를 위한 占察寶가 圓光이 거주하는 절에 설치되었고, 여기에다가 그 기본재산으로써 一百結의 田畝를 施納한 檀越이 있었으며, 그것이 약 650년 뒤가 되는 高麗中期의 무렵까지도 그 納田이 당시의 東平郡에 아직 존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三國遺事의 撰者인 一然이 證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圓光이 占察寶라고 하는 조직기구를 설치한 것은 어디까지나 중생을 교화하여 그 어리석고 미혹함을 깨우쳐 주기 위한 歸戒滅穢의 법을 영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니, 다시 말해서 교화하는 방편으로 占察法을 依用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佛事를 행하기 위해서 사원에서 생겨난 寶라고 하는 형태가 후세에는 이것이 확대되어 일반의 사회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고, 前期的인 資本機能을 가지는 형태로써 일반사회에서 발전해 가게 되었지만, 본래는 佛事를 행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원에서 하는 寶에서는 利殖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이 寶가 존속하여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한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佛事法會가 계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까닭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신라에서의 占察法會가 길이 후세에까지 占察寶라고 하는 확고한 支援機構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계속하다가 마침내 眞表라고 하는 占察懺悔敎法의 大成者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신라의 사람들을 懺悔戒法으로 널리 교화하게 하는 커다란 공헌을 이루게 되었던 것인데, 占察法會가 신라에서 유행한 것에 관한 기록이 단편적인 것으로 몇가지 전해지고 있는 정도이므로 그 자세하고 확실한 모양을 현재에 알 수가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라의 占察法會에 관한 기록으로서는 三國遺事 卷五의 仙桃聖母 隨喜佛事條¹²⁾에 나와 있는 智惠比丘尼에 의하여 設置되었다고 하는 占察法會에 관한 것이다. 즉

眞平王代에 智惠라는 比丘尼가 있어서 어질고 착한 일을 많이 하였다. 安興寺에 살면서 佛殿을 新修하려고 발원하였으나, 아직 힘이 미치지 못함을 한탄하더니, 어느 밤의 꿈에 한 女仙이 매우 훌륭하게 꾸민 모양으로, 아주 점잖은 태도로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이 仙桃山에 사는 神母인데, 그대가 佛殿을 新修하려는 願力을 세운 것을 기뻐하면서, 원전대 十斤의 金을 布施하여 그 佛事를 도우며 하는 바이니, 마땅히 나의 자리 밑에서 金을 찾아내어 主尊의

10) 7)의 ③을 參照바람

11) 7)의 ②를 參照바람

12) 三國遺事 卷5, (大正藏 49·1011·c).

三像을 粧點함과 아울러 壁에는 五十三佛과 六類의 聖衆 및 五岳의 神君을 그려 띄우고, 봄철과 가을철의 두 절기마다 10 일동안씩 善男·善女들을 많이 모아서 널리 일체 모든 靈駕들을 위하여 占察法會를 施行토록하여, 이 法會를 해마다 행하여 恒規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智惠尼가 놀라 깨어나서는 徒衆들을 이끌고 神祠에 나아가 그 자리 밑을 파보았더니 黃金 160량이 나왔으므로 그것으로 佛事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가 있었다.

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新羅에 있어서는 불교가 시행되는 초기에서부터 벌써 尼僧들에 의해서 占察法會가 매년마다 봄과 가을의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은 선남·선녀들을 모아서 행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新羅에서는 그 때부터 占察法會를 행하는 것이 다만 現世의 사람들의 罪障을 占知하여 그것을 滅除케하는 現世의인 利益만이 아니라, 先靈들의 冥福을 빌기 위해서도 행해졌던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仙桃聖母의 顯夢에서 당시의 新羅에서는 五十三佛에 대한 信仰과 護法善神으로써 山神과 神母 등을 信仰하고 있었음을 엿보게 된다. 또한 新羅에서 圓光에 의하여 이 占察法會가 公的으로 施行되자 곧 諸方의 寺院에서도 準行하게 되었고, 따라서 특히 尼寺에 있어서의 적합한 教化法으로서 성대하게 시행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 다음에는 圓光이 占察法會를 시행한지(613) 약 50년이 지난 新羅統一을 전후하는 시기에 활약한 元曉의 시대에 占察法會가 행해진 기록이 보인다. 즉 三國遺事의 蛇福不言條에¹³⁾

京師의 萬善北里에 한 寡婦가 있어서 남편이 없는데 妊娠하였다. 出生한 아이는 12세가 되도록 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모두가 그를 蛇童이라 불렀고, 장성하여 蛇福이라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高仙寺에 있는 元曉를 찾았는데, 元曉가 그를 보고 맞이하여 예배 하였으나, 그는 답례도 하지 않은 채 말하기를 '그대¹⁴⁾와 내가 옛적에 경전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이제 막 숨을 거두었으니, 함께 장례를 치루도록 함이 어떠하오' 하니 元曉가 답하기를 ' 좋소' 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元曉로 하여금 布薩授戒토록 하였다. 元曉가 시체를 향하여 축원하기를 '다시 태어나지 말지어다, 그 죽음 또 괴로우니라. 죽지도 말지어다, 그 태어남이 또한 괴로우니라.' 하니, 蛇福이 말하기를 '말이 많다' 하고는 다시 고쳐 말하되 '나고 죽음이 괴롭도다'라고 하였다. 두분이 함께 상여를 메고 活里山의 동쪽 기슭에 이르러서 元曉가 말하기를 '옛날 釋迦牟尼佛은 娑羅雙樹 사이에서 涅槃에 드셨는데, 이제 또 저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蓮華世界の 넓은 곳으로 들어 가려한다'고 하면서 풀포기를 하나 뽑으니,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세계가 있어서, 일곱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누각 등으로 장엄되어 있는 광경은 도저히 인간의 세상은 아니었다. 그 때에 蛇福이 시신을 깊어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자 땅이 본래대로 합쳐졌고, 元曉도 제 절로 돌아갔다. 후세 사람들이 그 일을 기념하여 金剛山의 東南편에 절을 창건하고, '道場寺'라 이름하였으니, 이 절에서 해마다 3월 14일에는 占察法會를 행하였고, 恒例의 行事로써 오래토록 계속되었다.

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華嚴의 大德인 元曉와 無名の 野聖인 蛇福의 言

13) 三國遺事 卷4, (大正藏 49·1007·b).

14) 原文인 '君我昔日馱經犍牛'를 '君は我が昔日に經を馱せるの犍牛なり' (國譯一切經, 史傳部 10, 519)로 한 것은 誤解하기 쉬운 번역이다. 犍牛는 牝牛 즉 암소이니, 여기서는 먼저 죽은 寡女를 가리킨다.

行이 華嚴經에서 말하는 ‘一中一切多中一 一即一切多即一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¹⁵⁾의 道理, 즉 須彌山에 芥子를 含藏하며, 芥子 씨속에 須彌山을 納入한다고 하는 事事無碍의 理致로서 表現된 것이라 할 것이며, 동시에 元曉·義湘 등을 비롯한 華嚴의 巨匠들이 출현하여 華嚴思想이 佛敎의 中心思想으로써 盛行하던 新羅統一時期의 무렵에는 모든 事物이 華嚴의 으로 理解되고 또한 表現되었던 풍조가 잘 반영되어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三國遺事의 撰者인 一然도 이에 대하여

淵默하는 龍眠이 어찌 等閑하기만 하리오.
 臨行하여 一曲할 때는 多般에 涉沒치 않음이 없도다.
 生死가 쫓라 하나, 본래는 쫓가 아니니,
 華藏世界는 아무리 浮休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寬闊하기 때문이다.

하는 讚을 통하여, 她福의 不言을 은근히 維摩의 淵默이 如雷하다고 한 바에다 견주었으며, 또한 她福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異跡을 아직 一生補處로 계시는 彌勒의 龍眠에다 겨누어 봄으로써 野聖의 言行이 凡常치 아니하였음을 記述코자 하는 意圖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新圓寂의 亡人에게 布薩授戒하였다는 것과 아울러 그러한 인연으로 이루어진 道場寺에서 매년 3월 14일에는 占察法會가 거행되었으며, 그것이 오래토록 恒規로써 전승되었다는 점이다. 亡人에게 大乘의 淨戒를 授與하여 그 공덕으로 離苦得樂케 함을 돕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佛敎式葬儀에 있어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터이지만, 亡人에 대한 布薩授戒가 新羅에서의 이 시기에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점을 이 기록을 의지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점을 日本佛敎의 관례와 비교해 본다면, 일본에서는 死者에게 授戒와 아울러 戒名이 주어지는데, 이 戒名에 격식의 높고 낮음이 나타나게 되는 까닭에 생전의 사회적 지위 또는 戒名을 받기 위한 冥加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戒名의 格에 차등이 있게 되는 관례가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에 비하여 韓國佛敎에서는 新圓寂의 靈駕에 대하여 ‘無常戒’를 誦授해 주지만, 亡靈에게 戒名을 주는 관례는 없다. 한국불교에서는 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발심하여 자발적인 신심오계를 직접받고, 이것을 생활가운데서 실천하는데에 계의 참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신도가 되면 반드시 在家五戒와 菩薩戒를 받고, 그 자리에서 戒名(또는 法名이라고도 부른다)을 받은 뒤에 남신도는 淸信士 또는 居士가 되며, 여신도는 淸信女 흔히 보살이라 부르게 되는데,¹⁶⁾ 따라서 受戒하여 戒名을 받는 일은 如法하게 불교를 信行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

15) 義湘撰, 華嚴一乘法界圖(韓國佛敎全書 2:1·a).

16) 한국불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女信徒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다. 그러한 名稱의 起源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說이 있으며, 여기서는 그러한 설명을 생략하지만, 남녀 신도가 다같이 大乘菩薩戒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女性 信徒만을 보살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으며, 生前에 사원이나 불교단체에서는 이 戒名을 불러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死後에도 生前의 戒名이 그대로 사용된다. 그리고 戒名을 지어주는 관례를 본다면, 淸信士는 二字로 하되, 玄悟거사·慧月거사·大心거사·圓默거사 등으로 지으며, 淸信女는 三字로 하여 福德華보살·智慧華보살·法性月보살·淸淨心보살·大願行보살·善修海보살 등으로 信心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평등하게 좋은 뜻을 가리어 지어줄 뿐이지, 戒名 그 자체에 높거나 낮음을 두지 않는 까닭에 格이 다르거나 하는 따위의 차별을 두는 일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으며, 계는 실제로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실천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한국불교의 특징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新圓寂의 靈駕에게 誦授하는 無常戒를 본다면,

無 常 戒¹⁷⁾

대저 無常戒라는 것은 涅槃에 들어가는 要門이며, 苦海를 건너가는 慈航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一切諸佛께서는 이 戒로 因하여 涅槃에 들어갔으며, 一切衆生은 이 戒로 인하여 苦海를 건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靈駕여, 그대는 今日에 圓寂히 六根과 六塵에서 벗어나 靈識이 獨露하여 부처님의 無上淨戒를 받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랴!

○○靈駕여, 劫火가 크게 타오르면 大千세계가 모두 무너지며, 須彌山과 큰 바다도 마르고 닳아 없어져서 남음이 없거늘 하물며 어떻게 이 몸이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데서 벗어날 것이며, 또 근심·걱정·슬픔 피로움에서 헤어날 수 있으랴.

○○靈駕여, 머리털·손톱·발톱·이빨과 가죽·살·힘줄·뼈 그리고 골수와 뇌수 등의 물질적 육체는 다 地대로 돌아가고, 침·땀·피·고름 그리고 가래·눈물·정액과 같은 물기와 대변·소변 등은 다 水대로 돌아가고, 몸의 더운 기운은 다 火대로 돌아가고, 몸을 움직이던 기운은 다 風대로 돌아가니, 四大가 제각기 흩어진다면 오늘의 이 주검이 어찌 있으리오.

○○靈駕여, 四大로 이루어진 이 몸등이는 입시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허망한 것이며, 잠시 있는 것이니, 애석하게 여길 것이 없느니라. 그대는 비롯함이 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無明으로 인하여 行이 있었고, 行을 인연하여 識이 있으며, 識을 인연하여 名色이 있었고, 名色을 인연하여 六入이 있으며, 六入을 인연하여 觸이 있었고, 觸을 인연하여 受가 있으며, 受를 인연하여 愛가 있었고, 愛를 인연하여 取가 있으며, 取를 인연하여 有가 있었고, 有를 인연하여 生이 있으며, 生을 인연하여 늙고 병들고, 근심과 슬픔과 피로움과 죽음이 있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無明이 멀하면 곧 行이 멀하고, 行이 멀하면 곧 識이 멀하고, 識이 멀하면 곧 名色이 멀하고, 名色이 멀하면 곧 六入이 멀하고, 六入이 멀하면 곧 觸이 멀하고, 觸이 멀하면 곧 受가 멀하며, 受가 멀하면 곧 愛가 멀하며, 愛가 멀하면 곧 取가 멀하고, 取가 멀하면 곧 有가 멀하고, 有가 멀하면 곧 生이 멀하며, 生이 멀하면 곧 늙고 병들고 근심과 슬픔과 피로움과 죽음이 멀하느니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그대로 寂滅함이 제모습이니, 佛弟子가 누구라도 진실한 행을 한다면 오는 세상에는 成佛함을 얻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하니, 그것이 다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요, 생하고 멸함이

17) 釋門儀範 下, p. 133.

다해 마치면, 적멸의 즐거움이 드러나리라.

거룩한 佛陀戒에 귀의하라.

거룩한 達磨戒에 귀의하라.

거룩한 僧伽戒에 귀의하라.

南無 過去寶勝如來 應供 正遍智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

○○靈駕여, 인연따라 다섯가지 쌓임으로 입시 이루어진 빈 접테기를 벗어 버리고, 신령한 심식이 뚜렷이 드러나서 부처님의 위없는 청정계를 받았으니, 이 어찌 흔쾌하지 아니하리오. 천당이거나 부처님 국토이거나 뜻대로 왕생하리니, 쾌활하고 쾌활하다. 서쪽에서 오신 달마대사의 법이 가장 담당하여 분명하다. 스스로 이 마음 깨끗이 하면, 깨끗한 성품이 본래의 고향이라. 영묘한 본체는 맑고 고요하여 있는 곳 따로 없으나, 언제나 산과 물에 그리고 온 천지에 그 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가 있듯이, 중생들의 몸이 생하고 멸하는 實相을 十二因緣法의 이치를 의지하여 설명한 다음, 대승경전의 대표적인 여러 계승을 의지하여 성불하는 도리를 명시하고, 三歸戒를 준 뒤에 마지막에는 禪偈로써 引導하고 있다. 이것이 先亡의 靈駕에게 주어지는 無常戒이다.

또한 이 地福에 관한 記事에는 그와의 인연이 있는 道場寺에서 占察法會가 행하여졌다고 하는 것이 주목되는데, 앞에서 말한 바 智惠尼가 設法會의 경우와 같이 해마다 이 法會를 계속하여 행하는 것을 恒規로 삼았다고 기록되고 있음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新羅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寺院에서 占察法會를 계속해 가고자 할 때에는 占察寶같은 조직을 만들어 운영함을 의지하여 오래토록 이러한 法會가 盛行하여 교화가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 것임을 볼 때, 그 당시 新羅사람들의 슬기로운 신심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기록으로는 新羅에서 제일 먼저 창건되었고 가장 큰 사원의 하나로 꼽히는 興輪寺에서¹⁸⁾ 六輪法會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즉 三國遺事 卷五의 大城孝二世父母條에¹⁹⁾

牟梁里에 사는 慶祖라는 가난한 한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머리가 매우 크고, 이마가 편편하여 마치 큰 성과 같다하여 이름을 大城이라 하였다. 집이 궁색하여 살림할 수가 없어서 부자인 福安의 집에 고용살이를 하고, 그 집의 밭 두어 마지기를 받아서 의식의 거리로 삼았다. 그 때, 漸開라는 開士가 있어서, 六輪會를 興輪寺에서 베풀고자 하여, 시주를 권하러 福安의 집에 왔다. 福安이 배 50 필을 시주하니, 漸開가 축원하기를 ‘시주께서 보시를 좋아하니, 호법선신들이 항상 지켜주시며, 하나의 보시에서 만배의 복을 받고, 안락하게 수명이 오래 살게 하시옵소서’ 하였다. 大城이 그것을 듣고 뛰어들어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문 밖에서 스님이 축원하는 것을 들으니,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생각컨대 우리는 틀림없이 전생에 선한 일 한 것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곤

18) 佛敎公認의 直後에 法興王에 의하여 착공되었고, 다음 시대의 眞興王 5년(544)에 완성되었다.

19) 三國遺事 卷5, (大正藏 49·1018·a).

궁한 것일 터인데, 지금 또 보시를 안한다면 내세에는 더욱 더 가난할 것이니, 내가 일하여 받을 받을 法會에 보시하여 낫날의 應報나 받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 어머니도 '좋다' 하여. 이에 그 말을 漸開에게 보시하였다.

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六輪會에 대하여 혹은 菩薩瓔珞本業經에서 말하는 바, 여섯 종류의 輪王²⁰⁾에 관계되는 法會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景德王代(742~764)에 저 유명한 佛國寺를 현세의 부모를 위하여 지었고, 또한 전세의 부모를 위해서는 石佛寺(현재의 석굴암)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당시의 재상이었던 金大城의 전생의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며, 撰者인 一然스님도 이것이 神文王代(681~691)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무렵이 바로 613년경에 시작되었던 占察法會가 新羅의 각처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시기였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六輪法會란 역시 占察法의 六輪相法을 행하는 占察法會를 가리키는 것이리라 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新羅에 있어서 7세기의 초기부터 8세기의 초기에 걸쳐서 占察法會가 각 사원에서 거행되고 있었던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眞表가 스승인 崇濟로부터 "占察經"을 받아서 亡身修懺의 엄격한 懺悔行을 수행하여 聖人에게서 淨戒를 感得하고는 이 占察懺悔戒法을 敎法으로써 확립하여 景德王의 시대(742~764)에 성대한 敎化를 널리 펴서 크게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던 배경에는 그 이전부터 新羅의 각 사원에 있어서 관계적인 행사로써 占察寶라고 하는 불사를 지원하는 기구와 조직의 뒷받침을 받아서 오랜 세월동안 계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占察法會의 전통과 유행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2. 眞表의 戒法

眞表의 懺悔戒法을 究明하기 위해서 그가 행한 修懺求戒의 行蹟과 所儀로 삼았던 占察經에 나타나 있는 懺悔法, 戒義, 占察法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考察해 보았는데, 여기서 이제까지 고찰하여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서 眞表의 戒法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얼른 한번 보아서는 神異스러운 記事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은 眞表에 관한 傳記의 내용을 잘 분석하여 살펴 본다면, 眞表가 戒를 구하기 위하여 가장 가혹한 亡身의 懺悔法을 수행하였다는 것, 그래서 마침내 好相을 보아서 自誓受戒하는 願을 성취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 戒法을 널리 펴기 위해서 占察簡子의 相法을 수용하여 독자적으로 매우 독특한 占察懺悔戒法이라고 하는 敎化法을 확립하였고, 이것으로써 크게 新羅 사람들을 敎化하였다는 점 등은 각 傳記가 다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은

20) 菩薩瓔珞本業經 卷上, (大正藏 24·1016·a~b)에 鐵輪王·銅輪王·銀輪王·金輪王·瑠璃輪王·摩尼輪王의 六輪王을 말하고, 이것을 각 十信·十住·十行·十廻向·十地·等覺 등의 菩薩五十一位에다 配對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新羅의 大興輪寺에서 행하였다고 하는 六輪會는 이 經說에 의지하여 열린 法會는 아닌 것으로 보아진다.

틀림없는 사실로써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眞表가 그와 같이 懺悔法을 수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 목적하는 바가 自誓의 淸淨戒를 얻는데 있었으며, 또한 占察法을 수용한 것도 그 戒法을 널리 펴서 많은 新羅 사람들에게 受持토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까닭에 그의 中心思想과 實踐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여 大乘菩薩戒思想을 근본적인 사상으로 삼고, 그것을 懺悔戒法이라는 방법을 써서 널리 教化를 행하였다는 것으로 集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戒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眞表가 所依로 삼은 것은 占察經이었으며, 따라서 그 엄청난 修懺의 求法行도²¹⁾ 占察經에서 말한 懺悔法을²²⁾ 그대로 實行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懺悔法을 수행한 결과로 얻어진 戒란 당연히 占察經에 說해진 十根本重戒와 菩薩의 三種戒聚를 總受²³⁾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 占察經에서의 三聚戒란 앞에서의 所依經의 成立에서 언급하였던 바대로 그 내용은 三種戒聚의 自誓受와 律制에 의한 七衆의 戒를 인정하고 있는 菩薩地持經²⁴⁾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三聚戒 가운데 ‘攝律儀戒’라는 名稱은 菩薩瓔珞本業經에서 따온 것 같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²⁵⁾ 대체로 그 내용은 菩薩地持經에서 나온 瑜伽戒계통의 三聚戒인 것이다.

瑜伽戒를 說하고 있는 瑜伽師地論의 本地分, 菩薩地の 別譯인²⁶⁾ 菩薩地持經의 특색은 菩薩戒의 근본인 三種淨戒를 처음으로 戒法으로써 設定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三聚淨戒의 起源이 된다.²⁷⁾ 그리고 四重과 四十二犯事의 戒條를 따로 세우고 있는 점도²⁸⁾ 또한 그러하다. 즉 菩薩地持經에서는 淨戒三種, 三種戒藏 또는 三種律儀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三種律儀 가운데 第一의 律儀戒에 대해서

律儀戒란 七衆이 받게 되는 戒를 말한다. 比丘·比丘尼·式叉摩那·沙彌·沙彌尼·優婆塞·優婆夷 등 出家人이나 在家人들이 자기 받아야 하는 것을 마르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律儀戒라고 이름한다.²⁹⁾

라고 하였듯이, 聲聞의 律制에 의하여 七衆이 각각 受持하여야 할 戒律 즉 別解脫戒로써

21) 三國遺事 卷4, 眞表傳簡條(大正藏 49·1007·b~1008·b).

22) 占察善惡業報經 卷上, (大正藏 17·904·a).

23) 上同, (大正藏 17·904·c).

24) 菩薩地持經 卷4, (大正藏 30·910).

25) 占察經에서 ‘攝律儀戒’란 名稱(大正藏 17·904)을 쓰기 이전에 이 이름이 三聚淨戒에 사용되고 있는 경전은 오직 菩薩瓔珞本業經뿐이다(大正藏 24·1020). 그리고 그 밖에는 金剛三昧經에 이 名稱이 보인다(大正藏 9·370).

大野法道, 《大乘戒經の研究》p.186의 三聚淨戒名稱表를 參照하라.

26) 初期의 經錄에는 菩薩經이라고 表示되고 있으며, 菩薩地持經이라는 이름으로 表示되기는 《開元錄》에서부터이다. (大正藏 55·519·c).

大藏經을 編制할 때에 縮刷大藏經에서는 《開藏知津》卷37에 의하여 이 경을 瑜伽論菩薩地の 異譯으로서 西土大乘宗經論의 部에 넣었고, 大正新修大藏經에서도 역시 瑜伽部에 넣었다고 한다. (大正藏 55·184).

27) 三聚淨戒는 深密解脫經 卷4, (大正藏 16·682·a)에 離諸惡行戒, 修諸善行戒, 利益衆生戒 등의 名稱이 있었고, 이것을 의지하여 菩薩地持經에서는 律儀戒, 攝善法戒, 攝衆生戒의 戒名과 그 內容을 設定하였다.

28) 菩薩地持經 卷4~5, (大正藏 30·910·b).

29) 上同, (大正藏 30·910·b~911·a).

각자의 律儀戒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三種의 淨戒는 서로가 一種의 戒가운데에 각각 다른 二種의 戒를 具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攝律儀戒가운데에는 攝善法戒와 攝衆生戒까지도 包攝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역시 다른 二戒도 또한 각각 다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三種의 戒는 하나하나의 戒가 相互間에 包攝하며 交流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하면서도 어디까지나 瑜伽의 三聚戒의 기본은 律儀戒에다 두고 있는 것이다. 즉 瑜伽師地論 卷75의 攝決澤分에

律儀戒의 攝持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三聚를 和合케 하는 것이니, 만약 능히 이 律儀戒에 있어서 精勤하고 守護할 수 있다면 또한 다른 두 가지도 精勤守護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을 (律儀戒) 능히 守護하지 못한다면 또한 다른 두 가지에 있어서도 능히 守護하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만약 律儀戒를 毀犯하는 일이 있다면, 일체의 菩薩律儀를 毀犯하였다고 이름하게 된다.³⁰⁾

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瑜伽戒를 說하고 있는 彌勒의 뜻이 三聚戒의 근본을 第一의 律儀戒에다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菩薩地持經에서는 一切의 戒에 대하여 戒의 分類, 戒條의 設定, 懺悔하는 法, 自誓受戒하는 法 등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三種의 淨戒를 戒相으로써 創設하였을 뿐만 아니라, 受戒하는 法까지도 設定하므로써, 衆생들이 이 受戒儀式에 의하여 三聚淨戒를 받고,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持戒하는 精神에 대해서는 衆생들의 생활하는 온갖 방면에 戒가 다 있는 것이므로 사람들은 이것을 의지하여 人生의 生活을 調正하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戒도 또한 그 내용이 時와 處와 機에 따라서 적정하게 변동되어야 한다는 견해에서 처음부터 이 三聚戒에는 특별히 정해진 戒의 조항을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이 三種의 淨戒 가운데 일체의 모든 戒를 포섭하여 衆生을 바르게 살게 하는 진정한 생명을 지닌 大乘의 菩薩戒으로써 說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戒라고 하는 것은 垢濁이 없는 淸淨生活을 말하는 것이며, 戒를 受持하는 것은 自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大菩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戒가 있는 곳에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걸쳐서 모두가 안온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持戒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自信을 가져도 좋을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인 것이며,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諸佛菩薩이 護持하는 속에서 살게 되며, 그래서 理想的인 彌勒淨土의 受用이 現成되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菩薩地持經에서의 瑜伽의 三種淨戒와 그러한 菩薩戒의 精神이야말로 占察經의 三種戒聚를 통하여 眞表戒法의 근본이 된 것이며, 그가 이룩한 占察懺悔敎法의 行化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정신이다.

이렇게 살펴 본 결과 新羅에 있어서의 大乘菩薩戒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음을 밝

30) 瑜伽師地論 卷75, (大正藏 30·711-b).

혀 낼 수가 있었다. 즉 하나는 文殊信仰과 華嚴思想³¹⁾을 신봉하는 慈藏律師에 의하여 널리 宣揚되었고, 新羅의 國都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 이전부터의 新羅地域에서 유행하여 후세에까지 新羅 大乘戒의 主流로써 오래토록 流布하여 현재에까지 널리 행해지고 있는 梵網系統의 菩薩戒가 있고,³²⁾ 또 다른 하나는 彌勒·地藏信仰과 瑜伽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眞表律師의 占察懺悔戒法에 의하여 크게 弘布되었고, 金山寺와 俗離山³³⁾ 등을 중심으로하는 옛 百濟와 高句麗의 地域에서부터 行化가 이루어진 瑜伽系統의 菩薩戒가 있었으니, 말하자면 新羅에는 이상과 같은 大乘戒의 二大戒脈이 있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眞表가 彌勒信仰을 지녔고, 또한 瑜伽戒를 내용으로 하는 戒法을 널리 보급시켰다는 점에서 본다면, 法相의 敎와 관계가 없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眞表는 瑜伽·唯識의 法相敎義를 宣揚한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戒法에 의한 실천적인 懺悔授戒의 敎法을 가지고 菩薩三聚淨戒를 弘布시킨 大乘戒律의 行化者일 따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眞表와 그의 戒法을 傳承한 제자들의 계통을 가리켜서 懺悔戒法을 근본으로 하는 大乘의 戒律宗의 기초를 新羅에 구축하였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있거니와, 만일 眞表가 新羅의 法相宗을 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 될 것이며, 따라서 종래에 그와 같이 주장되었던 일부의 學說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眞表의 懺悔戒法의 내용이 어떠한 특별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大乘戒로써 사용되고 있는 三聚淨戒가 바로 그것이라 한다면, 혹시 그다지 대단한 것으로 내세울만 한 것이 못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瑜伽戒에서는 大乘을 修習하는데 있어서 菩薩의 三種淨戒를 總受하여야 하며, 이것을 받음으로써 大乘의 比丘·比丘尼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眞表의 戒法의 근본이 되는 三聚淨戒는 바로 聲聞律藏에서 制定한 바 七衆의 戒를 認定하여 包容하고 있는 瑜伽系統의 三聚淨戒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 점은 新羅의 戒律思想史에 있어서 그리고 韓國佛敎의 전통적인 大乘菩薩戒의 施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三聚淨戒’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菩薩地持經에서 說하는 瑜伽의 三

31) 三國遺事 卷4, 慈藏定律條, (大正藏 49·1005·b~c) 그리고 卷 3, 台山五萬眞身條, (大正藏 49·998·b~c) 등에 慈藏이 華嚴을 講說하였으며, 文殊大聖을 親見하기를 熱願하는 등, 文殊信仰을 信奉하며 華嚴思想에 통해 있었음이 자주 기록되어 있다.

32) 三國遺事 卷4, 慈藏定律條, (大正藏 49·1005·b)에 慈藏이 皇龍寺에서 七晝夜동안 “菩薩戒本”을 演說하여 瑞相이 나타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의 “菩薩戒本”이란 아마도, 그 당시의 大乘戒研究의 추세가 대개 “梵網經”이었으며, 그 下卷이 “菩薩戒本”으로써 연구되었고, 元曉·義寂·大賢 등이 모두 “菩薩戒本”에 관한 疏를 著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慈藏이 講說한 것은 “梵網菩薩戒本”이었을 것이 틀림 없다.

33) 眞表는 金山寺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 永深은 俗離山을 중심으로 하여 占察懺悔戒法을 弘布하였다.

種淨戒에서는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第一의 律儀戒를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 律儀戒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律制에 의한 七衆의 律儀戒가 그대로 이 三聚淨戒의 律儀戒가 되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러한 菩薩地持經의 戒學도 섭취하면서 華嚴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된 梵網經과 또한 다시 이것을 의지하면서도 華嚴의 要素를 더욱 더 강력히 나누면서 성립된 菩薩瓔珞本業經³⁴⁾에서는 攝律儀戒의 내용을 본래 瑜伽戒에서 七衆律儀를 三聚淨戒의 律儀戒로 삼던 것을 바꾸어서 梵網經에서 說하는 十重禁戒로써 三聚淨戒의 攝律儀戒로 삼는 것으로 一大轉換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聲聞의 律儀를 따로 떼어 놓은 새로운 내용을 지니게 된 梵網經과 菩薩瓔珞本業經系統의 三聚淨戒는 天台의 圓戒系統에서 依用하게 되었고, 이것이 日本佛敎에서는 마침내 聲聞戒律을 의지하지 않는 天台 比叡山의 圓頓戒의 근본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華嚴思想을 지니는 慈藏은 大乘敎徒로서 梵網의 菩薩戒에 의하여 衆生敎化의 敎網을 펼쳐서 성대하게 新羅의 많은 사람들을 敎化하면서 또한 一國의 僧團을 통솔해 가야만 하는 大國統의 입장에서는 僧團의 出家者들에게 ‘四分律’에 의한 規猶³⁵⁾ 엄격하게 시행하므로써 질서를 유지하였고, 出家者가 大小乘의 戒律을 兼受하여 受持하는데 있어서도 比丘나 比丘尼는 具足戒를 律制에 의하여 別受케 하므로써 大乘比丘로서의 律藏의 規律도 遵守토록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은 中國佛敎에서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으며, 梵網系統의 菩薩三聚淨戒가 攝律儀戒와 聲聞律儀戒를 따로 하고 있는 것과도³⁶⁾ 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眞表의 戒法에는 瑜伽戒思想이 根底가 되어 있고, 그 戒法은 菩薩의 三聚淨戒를 總受하는 것이었으며, 聲聞律藏의 七衆律儀를 그 속에 포함하는 三聚淨戒로써 新羅 사람들을 성대하게 敎化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大乘戒律의 主流로서 후세에까지 流傳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梵網系統의 菩薩戒이며, 그 전통은 현재에 있어서도 韓國佛敎에서는 大乘菩薩戒는 梵網戒를 받고, 다시 따로 具足戒를 別受케 하여 僧律을 세우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菩薩의 三聚淨戒가 聲聞의 律儀를 다른 것으로 따로 취급하게 될 경우에는 흔히 聲聞戒를 아주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

34) 菩薩瓔珞本業經에서 說하는 六種性·六堅·六瓔珞 등은 그것이 梵網經이나 仁王般若經에서 導出된 것이다. (望月信亨, 《淨土敎의 起原及發達》 p. 191).

35) 新羅에 있어서의 僧律의 研究傾向은 文獻 등에 나타나 있는 律疏의 名目만을 보더라도, 智明·慈藏·圓勝·元曉·懷興 등에 의해서 著作된 10여종류의 疏가 모두 四分律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新羅에서의 僧律은 “四分律”을 의지하였음이 분명하다.

36) 菩薩瓔珞本業經 卷下の, 大衆受學品’에서는 攝律儀戒·攝善法戒·攝衆生戒의 三聚戒를 說하면서 그 가운데 攝律儀戒란 不殺生·不妄語·不淫·不盜·不酤酒·不說出家在家菩薩罪過·不慳·不瞋·不自讚毀他·不謗三寶 등 十無盡戒 즉 梵網經에서 說하는 十重戒가 바로 그것이라 하여 그 남남의 受戒相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三聚淨戒의 攝律儀戒와 聲聞律藏의 律儀를 별도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大正藏 24·1020·c).

이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예가 바로 日本의 佛敎이다. 聲聞戒律의 棄捨에 대한 是非는 우선 여기서는 그만두기로 하고, 그러한 일이 韓國佛敎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니, 그것은 바로 聲聞의 戒律을 그대로 攝律儀戒로 삼는 瑜伽三聚淨戒가 眞表의 懺悔戒法에 의하여 新羅에 있어서 梵網三聚淨戒와 함께 같이 성대하게 流布되었던 상황이 사실은 新羅에서 聲聞戒律을 棄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大小乘의 戒律을 兼受하는 일이 장애없이 시행되어진 배경이 되어 있으며, 大小乘의 戒律을 함께 受持하는 현재와 같은 韓國의 戒律이 있게 된 底流가 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여기까지 오면서 眞表의 懺悔戒法이 大乘菩薩의 三聚淨戒를 근본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해졌는데, 이 三聚戒가 說해져 있는 經論에 따라서 또는 時代의 經過에 따라서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변천하면서 발전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眞表의 戒法의 근본이 되어 있는 瑜伽三聚淨戒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三聚淨戒의 성립과 변천과정을 고찰하므로써 그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三聚戒의 最古의 出典은 華嚴經이라고 한다. 즉 華嚴經 十地品の 第二 離垢地에,

離一切殺生·離諸劫盜·離於邪婬·離於妄語·離於兩舌·離於惡口·離於綺語·不貪他物·離嗔害心·離於占相習行正見

이라는 十善道를 明示하여 이것을 律儀戒로 삼았고, 다음에 이 十善道가 지니는 善行으로서의 性格을 分析하여 이것을 攝善法戒로 삼고, 第三에는 十善道를 지키지 않는 자가 三惡趣에 떨어졌다가 다시 人間으로 再生한다 하더라도 갖가지 괴로움을 받게 됨을 가르쳐 주고, 이러한 輪廻의 苦에서 解脫하여 無上涅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十善戒을 受持하여야함을 說하여 이것을 攝衆生戒로 삼고 있다. 그러나 華嚴經에는 戒가 三種이 있음을 말하였을 뿐이며 名相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釋家들이 三聚戒義를 말하였다.³⁷⁾

이와 같이 華嚴經에는 十地品 이외에도 十廻向品 등에 三種戒·三種戒法·三種淨戒라는 말이 있으나,³⁸⁾ 이러한 十善戒의 三態가 바로 三聚淨戒라고 하는 明瞭한 名相은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世親의 ‘十地經論’에서는 이 華嚴經 十地品の 別行인 ‘十地

37) ‘十地品’의 第2, 離垢地는

唐譯 華嚴經에는 卷35, (大正藏 10·185·a)

晉譯 華嚴經에는 卷24, (大正藏 9·548·c)에 있다.

名相이 밝혀져 있지 않은 華嚴經의 三種戒에 대하여 三聚戒의 意義를 분명히 밝혀서 말한 疏釋家를 꼽는다면, 印度에서는 龍樹《十住毘婆娑論》卷 16, (大正藏 26·110·b), 世親《十地經論》卷4, (大正藏 26·145·c) 등이 있고, 中國에서는 唐 智儼《孔日章》卷3, (大正藏45·564·a), 法藏《探玄記》第6·第10, (大正藏 35·233·b, 301·b), 澄觀《華嚴經疏》第35, (大正藏 35·771·b) 등이 있다.

38) 晉譯 60卷 華嚴經 卷18에는 三種戒法·三種戒·三種淨戒 등의 譯語로 번역하였고, (大正藏 9·513·a~b). 唐譯 80卷 華嚴經 卷27에는 三種淨戒·三聚淨戒라는 譯語로 번역되어 있다. (大正藏 10·149·b).

經'의 敎說을 註釋하는데 있어서

淸淨戒에 二種이 있으니, 하나는 發起淨이요, 또 하나는 自體淨이다. 自體淨에 二種의 戒가 있으니, 一은 離戒淨, 二는 攝善法淨, 三은 利益衆生戒淨이다.

라고 하여, 三聚淨戒의 이름을 사용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³⁹⁾ '十地經論'에서는 十善의 自體를 明示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離戒淨이지만, 이에 대하여 解深密經에서의 三聚淨戒⁴⁰⁾를 이어받은 瑜伽論에서는 第一의 自體를 밝히는 점을 律儀戒라고 부르고, 이 律儀戒는 七衆의 別解脫律儀라고 하여,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獨創의인 발전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⁴¹⁾ 그리고 玄奘이 解釋한 瑜伽論의 本地分 가운데 菩薩地의 글을 의지해서 만들어진 '菩薩羯磨文'에는 가장 구체적으로 三聚淨戒가 說明되어 있다.⁴²⁾ 이에 대하여 '律宗綱要'에서는

諸大乘論에 三聚淨戒의 名과 義와 名相을 說한 바가 매우 많지만, '瑜伽大論'에서 說한 바가 가장 깊은 뜻을 다하고 있다.⁴³⁾

하였고, 또 律儀戒에 대해서는

瑜伽의 戒本은 如來께서 설한 바 諸大乘經의 곳곳에 散說되어 있는 여러 戒法門을 採集하여 一大尸羅藏法을 만들었다. ……오직 大乘만이 아니라, 또한 小乘에서 制定한 毘尼까지도 採擇하였으니, 攝律儀戒는 七衆의 戒인 까닭이며, 또 大는 小를 含納하는 까닭이며, 三乘이 共通하는 까닭이다.

라고 하여, 菩薩의 律儀戒와 聲聞이 받는 七衆의 別解脫律儀는 그 戒相이 전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⁴⁴⁾

이미 戒의 大小兼受가 그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것을 瑜伽論에서 律儀戒로써 받아 들이게 되었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初期大乘佛敎가 발생하면서 傳統的인 原始佛敎와 部派佛敎를 批判하면서 聲聞律儀와는 關連없이 獨自的으로 佛敎의 社會化와 大衆化를 위하여 十善으로 戒學을 만들어서 실천해 왔던 大乘菩薩들도 차츰 시대가 흐를수록 어느새 모르게 그들 역시 出家하여 比丘가 될 때에는 聲聞과 같은 具足戒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中國에 있어서도, '四分律'에 의거한 具足戒의 作法이 確立되었을 무렵인 6세기경 이후에는 四分律로써 受戒하는 것이 大乘佛敎徒의 行儀인 것으로 固定되기에 이르렀다.⁴⁵⁾

39) 十地經論 卷4, (大正藏 26·145·b~c).

40) 解深密經 卷4, (大正藏 16·705·c).

41) 瑜伽師地論 卷40, (大正藏 30·511·c).

42) 瑜伽師地論 卷40, (大正藏 30·710·c).

43) 律宗綱要 卷上, (大正藏 74·7·a).

44) 律宗綱要 卷上, (大正藏 74·2).

45) 平川彰, 大乘戒と十善道(印度學佛敎學研究, 8卷·2號, p. 281).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瑜伽論에서 聲聞의 律儀와 菩薩의 律儀가 같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一切의 別解脫律儀를 受持하는 것이 菩薩의 戒律儀를 受持하는 것에 비하여 千分の 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그 不共性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⁶⁾ 그런 까닭에 道倫(혹은 遁倫)의 瑜伽論記에서는⁴⁷⁾

菩薩律儀와 聲聞律儀는 그 體에 있어서 差別이 있다.

고 하여, 그 不共性을 지적하면서 해석하기를, 三聚淨戒는 제각기 止惡, 作善, 利他的 다른 뜻을 갖고 있으나, 이것은 그 體가 各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一戒가 갖추어 가지고 있는 三種의 特質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 三種의 뜻이 菩薩의 律儀 가운데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고 하면, 菩薩의 戒와 聲聞의 戒가 共이나 不共이나를 辨別하는 기준은, 律儀戒가 지니고 있는 止息의 方面에서는 共이지만, 聲聞이 止息만으로 할 것을 다했노라고 하는데 대해서, 菩薩의 律儀戒에는 여기에 攝善法과 饒益有情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轉作이 增加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不共임을 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戒가 止息戒인 동시에 轉作戒이기도한 경우라면 人間行爲의 복잡함을 調整하기 위해서도, 瑜伽論에서는 菩薩이 修習하여야 할 學處에 갖가지의 많은 例外와 條件을 付加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菩薩이 有情을 利益케 하기 위하여 犯한 罪라면, 그것은 도리어 많은 功德이 발생하는 까닭에 利他를 위한 일이라면 學處에 順종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融通性이 있는 持犯開遮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菩薩이 罪를 犯했느냐, 아니냐하는 기준은 業道の 是非善惡보다는 그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그 菩薩 自身이 菩提心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아니냐하는 데에 重點이 두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문인 것이다. 그러기에 菩薩의 戒에다 聲聞의 律儀를 받아 들어서 大乘戒와 小乘律을 兼受할 수 있는 素地가 만들어지게 된 것도 결국은 적극적으로 一切衆生을 攝受하려는 菩薩精神의 具現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中國에서는 唐代의 道宣도 이 瑜伽論의 정신을 의지하여 그의 ‘四分律行事鈔’에 說하기를⁴⁸⁾

律儀의 一戒는 聲聞과 다르지 않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分通大乘, 즉 부분적으로는 聲聞律儀가 大乘과 共通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大乘과 小乘의 구별이란 教旨 그 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라, 衆生の 根機에 따라서 悟解에 差別이 생기게됨을 따라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乘三聚戒의 하나인 攝律儀戒의 戒相은 聲聞戒와 같은 것이며, 거기에 護心の 戒

46) 福井靜志, ‘菩薩戒律儀의問題點’ (印度學研究, 15卷·1號 p.186).

47) 瑜伽論記(大正藏 42·523·b~c).

48) 道宣,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卷下, (大正藏 40·189·c).

가 더하게 되는 것이 다름뿐이기 때문에 戒가 大乘이다, 小乘이다 하는 것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에 만일 聲聞律儀라도 上品心을 가지고 受戒한다면, 그것이 바로 菩薩의 三聚淨戒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⁴⁹⁾

三聚淨戒는 이상과 같은 般若系統과 華嚴系統 그리고 唯識系統에서는 瑜伽論 이외에도 解深密經, 攝大乘論, 大乘莊嚴經論, 成唯識論 등에 說해져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이미 많은 戒經에 散說되어 있는 大乘戒學을 綜集하려는 意圖를 가지고 戒品 等에 있어서 여러가지 새로운 機軸을 만들어내므로써 후세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남긴 경전이 바로 菩薩地持經이었다. 이 경에서 만들어낸 新機軸이라고 하는 것은 즉 三種淨戒와 四重 四十二犯事라고 하는 戒條를 設定한 것을 말하는데, 三種戒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三聚淨戒>를 明示한 최초의 경전으로써 알려져 있는 解深密經에서⁵⁰⁾ 明示하기를

戒에 三種이 있으니, 一은 轉捨不善戒, 二는 轉生善戒, 三은 轉生饒益戒니라.

하였고, 또 같은 異譯本인 ‘深密解脫經’에서는⁵¹⁾

尸羅波羅密에 三種이 있으니, 이른바 離者惡戒, 修諸善行戒, 利益衆生戒니라.

라고 戒의 名目を 明示하고 있음을 의거해서 瑜伽論과 함께 菩薩地持經에서 처음으로 一은 律儀戒, 二는 攝善法戒, 三은 攝衆生戒라고 하여 이것을 菩薩의 調正道로써 提示함과 동시에 그 내용까지도 開設해 보인 뒤로부터는 己後의 大乘經論에서 이러한 名目の 三聚淨戒의 形式을 많이 따르게 되어, 마침내 이것이 大乘戒의 典型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名稱에 관한 譯語는 일정하지 않으며, 名目の 변동이 매우 많다.⁵²⁾

菩薩地持經에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주목할만한 새로운 機軸이 있으니, 즉 이 경에서는 三聚淨戒를 戒相의 一種으로써 創設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이것을 受持하므로써 生活을 調正하는 근본으로 삼기를 명확히하여 이것을 實生活에다 密着케한 공적이 매우 큰 것이다. 이렇게 菩薩地持經에서 만들어진 戒條는, 다시 이것을 받아서 改修한 菩薩善戒經과 菩薩戒要義經을 거쳐서 梵網經에서 採用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오히려 梵網經에는 文面上으로는 三聚淨戒說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新羅의 大賢이 이것을 ‘菩薩戒本宗要’에서 梵網의 菩薩戒는 三聚淨戒임을 명확하게 지적하였을뿐만 아니라,⁵³⁾ 이 三聚淨戒 속에는 六波羅密과 四攝法 등의 萬行

49) 上同, (大正藏 40·149·b).

50) 解深密經 卷4, (大正藏 16·605·c).

51) 深密解脫經 卷4, (大正藏 16·682·a).

52) 大野法道, 大乘戒經研究 p. 186.

53) 大賢, 菩薩戒本宗要 卷1, (大正藏 45·918·b).

이 具足히 攝持되어 있지 않음이 없다고 說明하고 있으며,⁵⁴⁾ 이같은 大賢의 탁월한 견해를 이어 받은 新羅의 義寂은 그의 ‘菩薩戒本疏’에서⁵⁵⁾

前의 十重戒를 律儀로 判定하며, 後의 四十八輕戒를 나누어서 余二(攝善法, 攝衆生)로 한다. 經에서 說하는 바 律儀戒는 所謂 十波羅密, 攝善法戒는 所謂 八萬四千法門, 攝衆生戒는 所謂 慈悲喜捨이니, 教化를 一切衆生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衆生이 모두 安樂을 얻게 하는 것이다. 또 四十八 가운데, 前의 三十戒는 多分히 攝善이며, 後의 十八戒는 多分히 利生이다.

라고 分析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菩薩地持經’에서 三聚戒의 形相을 採用하였다고 하는 ‘菩薩瓔珞本業經’과 同一한 說이다.⁵⁶⁾

그런데, 이 菩薩瓔珞本業經의 特色은, 菩薩地持經에서 三聚淨戒를 採用하면서도 그때까지도 七衆의 別解脫律儀戒로써 해당시키고 있던 攝律儀戒에서 別解脫戒를 排除하고는, 梵網經에서 說하는 十重禁戒를⁵⁷⁾ 攝律儀戒로 삼게 되므로해서 菩薩地持經과 梵網經의 二戒를 結合시킨 새로운 내용의 三聚戒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別解脫戒를 律儀戒로 삼는 중래의 瑜伽系統과는 그 軌道를 달리하게 되었고, 名實이 相符하는 大乘戒로서 後世의 圓頓戒의 根本이 되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瑜伽論論記에서 하나의 戒 가운데에 三聚淨戒의 三種의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가장 구체적인 例로는 菩薩地持經에서⁵⁸⁾

菩薩이 이미 三種의 律儀戒를 受한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律儀戒는 三聚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또한 三聚를 總稱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說이다.

中國의 慧遠(523~592)은 여기에 대하여 ‘大乘義章’에서⁵⁹⁾

三聚는 皆止惡이며, 皆作善이며, 皆自利이며, 皆利他이다.

라고 한다. 즉, 스스로 三聚淨戒를 受持하여 修行하는 것은 涅槃의 因이 되는 것이므로 모두 다 自利인 것이며, 이 三聚淨戒를 受持하여 修行해서 菩提를 얻게 된다면, 衆生을 利益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모두가 다 利他가 된다는 것이다.

法藏(643~712)도 梵網經菩薩戒本疏에서 이에 관하여 역시

十戒가 闡發히 다 三聚를 具足하고 있다.

54) 上同, (大正藏 45·917·c).

55) 義寂, 菩薩戒本疏 卷上, (大正藏 40·670·a).

56) 菩薩瓔珞本業經 卷上, (大正藏 24·1010·以下).

57) 梵網經 卷上, (大正藏 24·997).

58) 菩薩地持經(大正藏 30·917·b).

59) 慧遠, 大乘義章(大正藏 44·659·c).

하면서, 梵網經의 十波羅夷가 止惡에 重點을 둔 것이라 하여 律儀戒라고 하지만, 他를 죽이지 않는데에 있어서 이미 慈悲利他가 이루어져 있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데서 바로 自利利他하는 少欲의 善淨行이 행해지고 있는 것과 같이, 止惡하는 일이 그대로 作善으로 이어져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뜻에서 三聚淨戒는 離惡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해서 모두가 그대로 律儀戒인 것이며, 또 이러한 일들이 衆生을 위하는 것이 되지 않음이 없으므로 해서 모두가 바로 攝衆生戒의 實踐인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十重戒만이 아니라, 四十八輕戒도 그러할 것이며, 또한 一切戒가 모두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大賢은 四十八輕戒를 해석함에 있어서도⁶⁰⁾

이와 같은 諸戒가 낱낱히 모두 다 三聚戒의 義를 具足하고 있다.

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大乘戒의 근본이 되는 三聚戒의 戒義가 <一中一切多中一 一即一切多即一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라고 하는 圓融無碍하면서 互攝相通하는 無盡緣起觀에서 모든 것을 보는 華嚴諸家들에 의하여 낱낱의 戒가 모두 다 三聚의 義를 具足한다고 하는 圓融互攝의 境地에까지 發展하게 되었으며, 三聚淨戒의 戒義가 이와 같이 發展하게 되는데 있어 大賢의 ‘梵網經古迹記’와 ‘菩薩戒本宗要’가 참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3. 占察懺悔戒法에 의한 行化와 傳承

眞表의 戒法의 특색은 占察懺悔를 행하는데 있으며, 이것이 占察經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占察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앞에서 考察한 바 眞表의 占察法⁶¹⁾과 그리고 占察經에서의 木輪相에 의한 占察法⁶²⁾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알 수 있듯이 眞表는 占察經에서 說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占察方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占察經에서의 占察하는 방법은, 10개의 木輪을 던져서 宿世에 지은바 善·惡業의 차별을 占察하는 제 1의 十輪相, 3개의 木輪을 던져서 宿世로부터 쌓고 모아 온 바 集業의 멀고 가까움과 강하고 약함과 크고 작음 등의 차별을 占察하는 제 2의 三輪相, 6개의 木輪을 던져서 과거·현재·미래三世에서 受報하는 차별을 占察하는 제 3의 六輪相 등 이러한 세 종류의 輪相法이 있어서, 占察할 때, 열가지 善·惡의 名相을 새긴 十輪, 身·口·意의 三業의 強弱相을 그린 三輪, 三世에 受報하는 數를 쓴 六輪 등을 차례로 던져서 각 輪相에 名·相·數가 나타나는 바를 보고 善惡果報의 차별을 占察하는 것으로써 189종의 差別相을 設定하

60) 法藏, 梵網經菩薩戒本疏(大正藏 40·603).

大賢, 梵網經古迹記(大正藏 40·708·c).

61) 宋高僧傳 卷14, (大正藏 50·794·a~c) 參照.

62) 占察善惡業報經 卷上, (大正藏 17·902·b~c) 參照.

고 있다. 이에 비하여 眞表의 占察法에서는 그러한 189종의 善惡果報의 差別相을 한 가지씩 새긴 189개의 簡子が 있어서, 이것을 眞性이라고 부르는 제 8과 제 9의 별개로 된 2개의 簡子和 함께 던져서 거기에 나타나는 모양에 따라 懺悔하여 滅罪됨을 얻었는지의 與否를 證驗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러한 眞表의 占察方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戒를 懇求하는 사람은 占察하기에 앞서 반드시 懺悔法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懺悔를 법대로 수행하는 정진을 마친 뒤에 占察하는 방법을 행해서, 그 懺悔에 의하여 滅罪가 成就되었는지를 徵驗하게 된다. 만약 懺悔滅罪를 성취하였다는 占相이 나타났을 때는 上品戒를 얻게 된다. 만약 아직도 滅罪하지 못하여 業障이 남아 있다는 占相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나타난 罪業을 다시 더 懺悔하여 滅罪하므로써 中品戒를 얻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서도 아직 滅罪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占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 다시 懺悔하여야 비로소 下品戒를 얻게 된다.

이렇게 살펴 본 결과 眞表의 占察方法은 占察經에서의 방법보다 더 懺悔와 占察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占察하는 방법도 훨씬 더 簡明하고 아주 容易하게 占察할 수 있도록 改善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주 독자적인 占察懺悔戒法을 확립한 眞表는, 이 戒法으로 사람들을 教化하기 위한 활동의 本據로써 金山寺를 重創하여 彌勒佛을 奉安하고는, 시종 일관하여 懺悔戒法에 의한 行化에 전력을 다하였고, 그의 독특한 懺悔戒法은 차츰 新羅에 크게 弘布되어 갔다.

그런데 眞表가 教化를 한 事蹟에도 다분히 奇蹟的인 요소가 결부되어 역시 神秘化된 점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眞表의 戒法과 그의 戒律思想의 내용을 考察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한 한 傳說的인 요소에 얽매임이 없이 眞表의 占察懺悔戒法의 성립에 관련되는 經論이나 文獻 등에서 傍證을 구하면서 戒學的인 측면에서 천명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教化에 관한 事蹟을 본다면 그것을 전해 주고 있는 세 가지 傳記에 들어 있는 記事들이 모두 한결같이 아주 신비적인 奇蹟이 付加되어 있는 傳說的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들의 어디까지를 의거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史實로써는 眞表가 統一新羅의 北西部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全羅北道 金堤郡의 金山寺와 北東部에 위치하고 있는 江原道 杆城郡의 鉢淵藪를 중심으로 삼아서 占察懺悔戒法에 의한 教化를 널리 퍼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는 일, 그리고 뒤에는 景德王의 宮中에서 君臣들에게 菩薩戒를 授與하게 되므로써 그의 教化는 마침내 新羅의 중심부까지 이르게 되어 統一新羅의 전체에 걸쳐서 그의 行化가 펼쳐졌다는 일 등을 확인하면서, 각 傳記에 있는 記事 등을 勘案하면서 眞表가 教化를 편 자취와 그 후세의 傳承에 관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眞表가 戒法에 의하여 教化를 편 일에 관하여 三國遺事 卷4, ‘眞表傳簡’條⁶³⁾에는

表가 이미 聖人の 記前을 받고는 金山寺에 와서 住하면서, 每歲에 戒壇을 열어서 法施하는 일을 크게 擴張하였으며, 그 壇席의 精嚴이 아말로 末法時代에서는 일찌기 보기 드문 바가 있었다.

고 기록하였고, 또 이 傳記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 ‘石記’⁶⁴⁾에는

이미 金山寺를 重創하려 하여 참회정진하던 산에서 내려와……金山麓로 가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서 얼마되지 않아서 이것을 완성하였다. ……師는 檀緣들에게 권하여 彌勒의 丈六像을 鑄成하였고, 또한 下降하시어 授戒하시는 威儀의 相을 金堂의 南壁에다 그렸다. 甲辰(764) 6월 9일에 鑄成하였고, 丙午(766) 5월 1일에 安置하였는데, 이 歲가 大曆元年이었다.

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기술하기를

또 다시 가서 高城郡에 이르자 皆骨山⁶⁵⁾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鉢淵藪를 創建하여⁶⁶⁾ 占察法會를 열었고, 여기서 7년을 住하였다. 그 당시에 溟州의 境界에서는 年穀이 어물지 않아서 人民들이 모두 飢饉을 당하였다. 師는 그들을 위해서 戒法을 說하니, 사람들이 奉持하고, 지극하게 三寶를 恭敬하였다. 갑자기 高城의 海邊에 수없이 많은 魚類들이 스스로 죽어서 나온 것을 사람들이 모두 食량으로 삼아서 굶어 죽을 것을 면할 수가 있었다.⁶⁷⁾

고 하였고, 이 일에 대해서는 ‘眞表傳簡’에서도⁶⁸⁾ 간단하게나마,

教風의 行化가 두루 퍼졌으며, 遊涉하여 阿瑟羅州에 이르자 島嶼의 사이에 魚鼈들이 架橋를 이루고, 眞表는 이들의 마중을 받아서 水中에 들어가 法을 講說하고, 그들에게 戒를 주어 받게 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어서, 眞表가 行化한 事蹟에는 그와 같은 異蹟들이 付加되어 있음을 볼

63) 三國遺事 卷4, (大正藏 49·107·c).

64) 上同, (大正藏 49·1008·b).

65) 江原道 高城郡에 있는 金剛山이 多期에는 皆骨山이라 불리운다.

66) 江原道 杆城郡 新北面 龍溪里에 있는 鉢淵寺를 말함. 眞表에 의해서 創建되었는데, 眞表는 晩年の 親父와 함께 이곳에서 道業을 勤修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孝道를 다하였다고 하며, 眞表도 역시 후에는 이 절에서 入寂하였다. 眞表가 鉢淵藪에서 入寂한 모양을 三國遺事 卷4, ‘鉢淵藪石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

‘師가 遷化할 때에, 절의 동쪽에 있는 큰 바위에 올라 가서 示滅하였다. 제자들은 眞體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두고 供養하다가, 骸骨이 散落하게 됨에 이르러서야 그 위에다 흙을 덮어서 가리우고 幽宮으로 삼았다. 그곳에서 靑松이 돌아 자라서 세월이 오래되어 枯死하면, 다시 一樹가 生成하고, 뒤에 다시 또 一樹가 生長하곤 하였으나, 그 뿌리는 하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도 아직 雙樹가 現存하고 있다. 敬慕하는 마음이 지극한 사람들이 더러 松下에서 遺骨을 찾게 됨에 혹은 얻기도 하고 혹은 얻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러다가 聖骨이 아주 없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丁巳年(1197) 9월에 특히 松下에 나아가서 遺骨을 모두 주어 모아서 筒에다 담았더니 三舍정도가 되었다. 大巖 위의 雙樹 밑에 立石하여 安骨하다 云云’

즉 그 당시의 寺主였던 瑩峯이 紀念하는 碑石을 세우고, 眞表의 事蹟을 記錄한 것이 ‘鉢淵藪石記’이다. (大正藏 49·1008a~1009·a).

67) 三國遺事 卷4, (大正藏 49·1008·c).

68) 上同, (大正藏 49·1007·c).

수가 있는데, 이러한 記事들을 다만 상식에서 벗어난 황당무계한 傳說에 지나지 않다고 물리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말하자면, 그토록 그 당시에 있어서 眞表의 戒法에 의한 教化가 널리 어느 누구에게나 어려움 없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行化가 얼마나 성대하였던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景德王이 이러한 소문을 전해 듣고 궁궐로 청해 맞아서 菩薩戒를 받고 租 7萬 7千石을 보시하였다. 또 왕후와 궁녀들 그리고 조정의 대신⁶⁹⁾들도 모두 戒를 받았고, 絹 5百端과 黃金 50兩 등의 物品을 布施함에 眞表는 모두 받아 들인 뒤 이것들을 諸山の 寺院에 고루 나누어 주어서 널리 佛事를 일으키도록 하였다.⁷⁰⁾

한다. 이른 바, 당시의 新羅에 있어서는 아주 邊地라고 할 만한 百濟의 故地에서부터 커지기 시작한 新羅에 있어서의 大乘菩薩戒의 또 하나의 흐름이 드디어 新羅의 중심부인 首都에까지 이르렀고, 新羅의 王室과 貴族들이 모두 眞表에게서 戒를 받게 되므로써 그의 教化는 가히 한 세상을 휩쓴 느낌이 없지 않았으니, 이렇게 해서 瑜伽戒를 중심으로 하는 眞表의 戒法은 新羅佛敎에 있어서의 大乘戒律思想의 커다란 또 하나의 戒脈으로써 움직일 수 없는 은연한 세력과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확립된 眞表의 占察懺悔戒法은 많은 제자들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그 傳承에 대하여 ‘眞表傳簡’에서는

得法의 領袖로서는 永深·寶宗·信芳·體珍·珍海·眞善·釋忠 등이 있어서 모두가 山門의 祖師가 될만 하였다. 永深이 簡子를 眞傳하였으며, 俗離山에 住하면서 훌륭히 家子の 역할을 다하였다. 그러나 壇에서의 作法은 占察의 六輪과는 약간 다르니, 作修하는 방법은 山中에서 傳하는 바 本規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행하였다.⁷¹⁾

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眞表의 占察法이 占察經에서 規定하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았던 것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추정하건대 아마도 新羅에 있어서 종래부터 행하여져 오던 占察經에 의한 六輪 등의 占察方法은, 眞表의 戒法이 나온 이후로는 眞性 혹은 眞簡이라고 부른 제 8과 제 9의 二簡子를 중심으로 189 簡子를 사용하는 占察方法으로 바꾸어져서 이러한 방법이 널리 퍼져서 시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眞表는 제자들에게 戒法을 傳授하였음을 證明하는 信票로써 簡子를 주었고, 그 가운데서도 眞表가 彌勒大聖에게서 感得하였다고 하는 佛骨簡子를 傳授받은 제

69) 原文의 椒庭은 皇后의 後宮을 指稱하는 것이며, 列岳은 朝廷에 參列하는 諸臣들을 舉稱하는 것이다. (大正藏 49·1007·c).

70) 三國遺事 卷4, (大正藏 49·1007·c).

71) 上同.

자는 永深이었다. ‘石記’에서는 그 傳法의 모양을 다음같이 기술하고 있다.⁷²⁾

그 때에 俗離山의 大德永深은 大德融宗·佛陀 등과 함께 律師의 곳에 나아가 예배하고 소청을 말씀드리기를 ‘저희들은 千里를 멀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와서 戒法을 구하오니, 원하옵건대 法門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그러나 眞表師는 默然할 뿐 대답함이 없으니, 세 사람은 복숭아 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꾸로 땅에 떨어지면서 용맹스럽게 懺悔行을 수행하였다. 師가 이에 그들에게 傳教灌頂을 베풀고, 마침내 袈裟와 鉢盂, 그리고 ‘供養次第秘法’ 1권, ‘占察善惡業報經’ 2권, 189 권을 주었다. 다시 彌勒의 眞性인 제 8과 제 9의 簡子까지 주면서 격려하여 말하기를 ‘제 9는 法爾이며, 제 8은 新熏成佛의 種子이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수하여 부촉하노니, 이것을 가지고 俗離山으로 돌아가서 산에 吉祥草가 무성한 곳이 있을 터인즉, 그 곳에다 精舍를 創立하여, 이 敎法을 가지고 널리 人天의 衆生들을 濟度하며, 後世에까지 流布토록하라.’ 하였다. 永深 등은 가르침을 받들고 곧 俗離山으로 가서 吉祥草가 무성한 곳을 찾아서 절을 창건하여 吉祥寺라 이름하였고, 永深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占察法會를 施行하였다.

이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敎法을 傳承하는 제자들도 역시 스승인 眞表가 수행한 것과 같은 亡身懺悔의 수행을 용맹스럽게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眞表가 傳法하는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亡身懺悔法을 수행하여 친히 感得한 彌勒의 眞性인 제 8과 제 9의 二簡子와 189 簡子를 傳授해 주고는, 더하여 占察經과 ‘供養次第秘法’ 그리고 일반적으로 傳法의 信物로 삼는 衣鉢까지도 아울러 갖추어 줌으로써 敎法을 繼承해 가는 전통을 創立하였으며, 이 敎法을 가지고 널리 人天의 衆生들을 濟度하며 後世에까지 流布시킬 것을 付囑하고 있다.

眞表의 懺悔戒法을 傳承하였고, 그래서 이와 같은 占察敎法을 傳敎하는 제 2대가 된 永深은 그의 本據로써 俗離山에 吉祥寺를 創建⁷³⁾하고 占察法會를 開設하여 크게 敎化를 폈을 것이나, 永深에 관한 傳記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다음 永深의 敎法을 이어 받아서 제 3대가 된 제자는 新羅 제 41대 憲德王(809~825)의 王子로써 出家한 心地이다. 15세에 출가한 心地는 中岳⁷⁴⁾(八公山)에 止住하고 있었으나, 俗離山의 永深이 眞表의 戒法과 簡子를 傳承하여 法會를 열고 있음을 듣고 멀리서 부더 찾아가 法會에 참가하였고, 역시 亡身의 懺悔法을 수행하여 드디어 그 戒法을 傳承하게 되었던 경위를 三國遺事 卷 4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⁷⁵⁾ 즉

그 때 마침 俗離山의 永深公이 眞表律師의 佛骨의 簡子를 傳承하여 果訂法會를 開設함을 듣고 決心하고 찾아 갔더니, 이미 期日이 늦어서 參列함을 許諾받지 못하였다. 이에 땅에 자리하고 앉아서 이마로 마당을 두들기며 大衆을 따라 禮懺하였다. 7일이 지나 하늘에서 大雨雪이 내렸으나, 그가 선 곳의 땅 사방 10척 가량은 눈이 내리지 않았다. 大衆이 그 神異함을

72) 同上, (大正藏 49·1008·c).

73) 忠清北道 報恩郡 內俗離面 舍乃里 法住寺의 舊基.

74) 慶尙北道 大邱市 八公山의 別稱.

75) 三國遺事 卷4, (大正藏 49·1009·b~c).

보고 허락하여 堂地에 인도해 들이려 하였으나, 그는 사양하여 病이라 핑계하고 물러가 자기 머무는 방안에서 堂을 향하여 남모르게 微禮하더니, 팔굽과 이마에 피가 흘러 마치 眞表公이 仙溪山에서 하던 것과 같았다. 地藏菩薩이 매일 와서 慰問하였다. 法會가 끝나고 山으로 돌아갈 때에 途中에서 옷설 사이에 二簡子가 끼어 있음을 보았다. 가지고 되돌아와 永深에게 告하매 永深이 ‘簡子가 函중에 있는데 어찌 그럴 리가 있으리요’ 하고 조사해 보았다. 函은 封한대로 있었으나 열어 보니 簡子는 없었다. 深公이 대단히 奇異하게 여겨 惝惝히 써서 간직하였다. 또 가다가 보니 처음과 같으므로 다시 돌아와 告하였다. 永深公이 말하되 ‘佛의 뜻이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는 그 뜻을 받들라’ 하고 簡子를 주었다. 心地가 머리에 이고 산에 돌아가니 中岳神이 두 仙子를 데리고 山에서 마중하여 心地를 引導해서 巖上에 앉히고, 그들은 巖下에 엎드려 삼가 正戒를 받았다. 心地가 말하되 ‘이제 땅을 택하여 神聖한 簡子를 奉安하려 하는데, 우리가 指定할 수 없으니, 三君과 함께 높은데 올라 簡子를 던져서 占치자’ 하고 神들과 더불어 산 꼭대기에 올라 가 서쪽을 향하여 던지니 簡子가 바람에 날려 갔다. 그 때 神이 노래를 짓되 ‘바위가 멀리 물러 가니 平坦하고, 落葉이 飛散하니 땅이 깨끗하도다. 佛骨簡子를 찾아 얻어, 정결한 곳에 奉安하여 致誠할지어다’ 하였다. 이 노래를 부르고 簡子를 林泉中에서 얻었다. 그 곳에 堂을 짓고 安置하였으니, 지금 桐華寺 籤堂 北쪽에 있는 小井이 바로 그 곳이다.

라고 하였다. 心地도 역시 眞表나 永深에게 못지 않는 亡身懺悔를 수행하므로써 永深으로부터 戒法을 傳承하였고, 또한 傳來의 簡子와 衣鉢을 傳持하여, 本據地를 八公山으로 정하고, 여기에 桐華寺⁷⁶⁾를 創建하여 크게 教化를 宣揚함과 아울러 籤堂을 建立하고 簡子를 收藏하여 오래도록 후세에 傳하였다.

그리고 心地 이후의 傳承者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알려져 있지 않으나, 三國遺事 卷4에 의하면, 心地繼祖條에서,

高麗朝의 文士, 金寬毅이 撰한 《王代宗錄》에 말하기를 ‘羅末에 新羅의 大德, 釋冲이 太祖에게 眞表戒師의 袈裟 一領과 戒簡 189매를 獻呈하였다.’⁷⁷⁾

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心地의 이후에도 傳承이 계속되어서 新羅의 末에까지 이르렀고, 아마도 이 때의 傳承者로 생각되어지는 釋冲에 의하여 新羅가 멸망하게 되자 高麗의 太祖(918~943)에게 獻呈되었다는 것이다. 이 簡子가 桐華寺의 籤堂에 傳持되었던 簡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高麗 제16대 睿宗(1106~1122)의 때에 왕이 桐華寺에 傳持되어 오던 신성한 簡子를 宮中으로 迎入하여 瞻敬하던 때에 제9의 一簡이 없어졌기 때문에 牙로써 대신의 簡子를 만들어서 桐華寺에 반환되었는데, 三國遺事의 撰者인 一然(1206~1289)이 親見하였을 때에는 새 簡子도 옛 簡子와 거의 같은 색으로 변하여 있어서 새것과 옛것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⁷⁸⁾ 이와 같은 일들로 미루어 생각해 볼 때, 眞表의 教法은 新羅에 있어서는 물론이러니와 다시 高麗

76) 大邱直轄市 東區 道鶴洞 桐華寺.

77) 三國遺事 卷4, 心地繼祖條, (大正藏 49·1009·b~c).

78) 上同.

에 있어서도 적어도 一然의 시대까지는 簡子が 連續히 계속하여 傳持되었으며, 따라서 眞表의 敎法도 傳承되어 행해지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하겠다.

結 說

이상과 같이 眞表의 懺悔戒法の 내용을 알아 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대체적인 全貌를 밝힐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新羅佛敎의 戒律思想의 분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眞表의 占察懺悔戒法을 究明하여 감에 따라서, 그 懺悔思想은 거슬러 올라 가서는 唐에서 활약한 新羅의 스님 神昉의 地藏敬義에 의한 禮懺思想과 분명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며, 占察法에 있어서는 新羅의 各寺院에서 백년도 넘는 긴 세월동안 ‘寶’라고 하는 특수한 經濟機構에 의해서 뒷받침되면서 恒例적으로 계속되어 온 占察法會라고 하는 기반이 新羅에 있었으며, 이러한 여건들이 眞表가 새로운 방법으로 占察하여 懺悔하는 戒法을 創設하여 널리 新羅 사람들을 敎化하는 데 있어서 크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을 밝혀 낼 수가 있었다. 또한 眞表는 종래에 인식되어 온 것처럼 法相에 관련되는 인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철저한 大乘戒律思想에 의하여 敎化를 펴나간 戒法の 行化者였으며, 또한 그의 戒法の 내용이 瑜伽의 三聚淨戒였음이 관명되므로써 이제까지는 梵網戒만으로 생각하였던 新羅의 大乘戒律思想에는 사실은 또 하나의 瑜伽戒도 널리 행해져서 커다란 자취를 남기고 있음을 밝혀서 新羅佛敎에 뚜렷하게 大乘戒의 二大戒脈이 있었음을 분명히 드러 낼 수 있었던 점들은 本論文에서 이룩하게 된 큰 成果들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眞表의 占察懺悔戒法の 眞面目은, 新羅의 사람들에게 菩薩戒를 주어서 그들의 생활을 調整케 하므로써 大乘菩薩道를 실천토록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新羅가 바로 彌勒이 下生하기에 알맞는 佛國土로 淨化되어서 自他가 모두 다 함께 究竟에는 佛道를 성취하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그 戒法이란 말하자면 衆生戒이며, 菩薩戒이며, 佛戒인 것이다. 따라서 占察懺悔戒法에서의 占察法은 어디까지나 菩薩道를 수행하는데 따르게 되는 諸障難을 除去하기 위한 좋은 方便으로써 사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占察의 방법도 또한 거기에서 나타나는 罪業障을 消滅시키기 위한 진실한 懺悔法을 修習하여야만 眞正한 戒法の 成就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佛敎의 經典에 說示되어 있는 그 어떤 훌륭한 方便이라 하더라도 實行이 수반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空論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그와 같은 經敎의 方便에 따라서 上求菩提하는 菩薩道를 실천하며, 또한 下化衆生하는 敎化行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濟度하는 일이 제대로 행해질 때에 비로소 하나의 敎法이 成立하

게 된다. 이러한 뜻으로 보더라도 新羅에 佛敎가 傳播된 이후에 처음에는 彌勒信仰思想이 流行하였고, 다음에 華嚴思想이 盛行하였으며, 이어서 淨土信仰思想이 興行하는 등 여러 가지의 佛敎思想이 차례로 꽃피는 가운데서, 眞表에 의하여 占察懺悔戒法이라고 하는 아주 特異한, 그래서 매우 新羅佛敎의인 것이라고도 할 만한 獨特한 敎法이 확립되어서 크게 널리 流布되었다고 하는 것은 歷史的으로 대단한 意義를 지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新羅佛敎에 있어서 이룬 커다란 結果의 하나인 동시에, 大乘戒律思想의 분야에 있어서도 大乘菩薩道の 根幹이 되며, 基盤이 되는 菩薩의 三聚淨戒가 通佛敎의인 性格을 지니는 新羅佛敎의 안에서 梵網系統의 菩薩戒와 瑜伽系統의 菩薩戒가 함께 모순없이 流布되었던 事實과 그러한 傳統은 後世의 韓國佛敎戒律이 大小乘의 戒律을 兼受하며, 圓融하면서도 戒律의 嚴淨한 受持를 重要視하는 氣風을 形成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